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청원을 위한 공청회 지정토론문

녹음정리 : 유 원 적 *

본 발언내용은 지난 1월 16일 본 협회와 한국박물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국회에서 가졌던 공청회의 지정토론자 토론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윤색없이 정리한 것이다. 지정토론에 앞서 40분간 유원적 교수의 동별 개정시안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유교수가 발표한 개정시안은 본 협회의 『고문화』 48집(1996. 6)에 실린 개정시안과 대차 없으므로 게재는 생략한다. 본 협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정시안을 토대로 지정토론의 요점을 보완하여 개정안으로 다듬어 국회에 청원입법으로 제출하여 의원입법 과정중에 있다.

— 편집자 —

- 일 시 : 1997년 1월 16일 15시~17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지정토론자

김순규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국장, 객원토론)

박영복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

박래경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윤병용 (부산광역시립 박물관장)

허동화 (사전자수 박물관장)

윤용이 (원광대학교 박물관장)

유홍준 (영남대학교 교수, 미술평론가)

사회 : 이해준 (공주대학교 박물관장)

* 목포대학교 교수 겸 박물관장

이해준 앞서 유원적 교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평소 유교수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발표에서 시간을 너무 축내지 않을까 마음 졸였는데, 오늘은 칼로 잰 듯이 시간을 정확히 맞춰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부와 교육부 및 국회, 그리고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정책실의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지정토론에 앞서 문화체육부의 김순규 문화정책국장께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주무국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고 하니 우선 그분의 발언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순규 국장을 소개합니다.

김순규 소개받은 김순규입니다.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이 많이 계시는데, 박물관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것은 저로서도 박물관에 관심이 많아서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뉴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제목이 한국과 미국의 박물관 제도의 비교연구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해외에 근무를 7년 했는데, 뉴욕에 한 4년 있었습니다. 83년도에 미국으로 나가 뉴욕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근무하면서, 제가 가장 놀란 것이 그 때 문화업무를 담당하여 그 뉴욕문화원의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미국 문화계의 각분야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박물관의 제도였습니다.

뉴욕일원의 박물관, 공식박물관이 550개입니다. 인구는 천 백만 정도 되지요. 그런데 현재 미국전역에 공식 뮤지엄이라고 하는 형태의 박물관이 약 7700개입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관람객은 연간 아마 수 천만 명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학교교육은 대학까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사회교육 즉 일종의 보는 교육은 뮤지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수 천만 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연문화는 일종의 공연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공연장과 박물관이 성인의 평생문화교육에 양대축으로 이게 유지되고 있는게 아닌가 봅니다. 다시 공무를 세워 해외연수 할 기회가 있어서, 박물관을 직접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가과목으로 뮤지엄 스터디를 1년간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코스내용에는 뮤지엄에 건축학도 있는 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전부 박물관 미술관이 변두리에 있는데 비하여, 박물관은 위치상 가장 도심에 있어야 되고 교통요지에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는 박물관 건축학의 제1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뮤지엄의 디스플레이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현대적으로, 첨단공법까지 이용해서 관객들에게 호감을 사 이용도를 높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뮤지엄의 각종 수집 컬렉션에 관한 문제나 보존관리 문제도 대단히 관심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한창 미국 문화기관들도 굉장히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모금 뭐 이런 문제까지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박물관 미술관에 대하여 거기에는 법이 일체 없습니다. 미국의 제도는 아까 유교수님 지적대로지요. 그런데 각종 내용을 넣어서 말하자면 규제하는 진흥법을 만들어 놓으면,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여기에 등록을 시키고 관리감독을 하게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하면은, 공무원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감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규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가 심해지는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나라의 박물관 제도의 통합적인 하나의 축, 카테고리를 허뜨러 놓는 문제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박물관이 비교적 앞선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이런 부문이 전부 뮤지엄 범주입니다. 뮤지엄 안에 우리가 말하는 고유의 박물관 개념인 박물관은 History Museum, 또 잘 아시는 미술관은 Art Museum, 과학관은 Science Museum,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은 Natural Museum 또는 인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 디즈니를 위한 몇 가지를 다 포함함은 물론, 첨단 과학 기술적인 그 주제공원까지 포함해서 전부 뮤지엄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거기 비하면, 우리는 여기 제안서에도 나왔지만, 각 분야가 다 갈라져 있고, 각 부처가 각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가 하면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92년도에 법을 만들 때 미술관측과 미술인들이, 미술관은 박물관과 다르니까 이것 별도용으로 별도의 진흥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면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관 따로 또 무슨 따로, 전부 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국내에 왜 박물관학과가 대학내에 없겠느냐 였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학과를 지금 나오면은 취직할 수 있는 인력시세라고는 국립박물관 정도에, 그것도 일년에 한 10명 내외 자리 뿐일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박물관학과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문현정보학과라고 일컫는 사서직의 사서학과로서는 전국에 도서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인력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력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각종 박물관이 장기적으로 볼 때 크게 발전하려면은, 박물관마다 아주 알차고 수준높은 큐레이터들이 다 박물관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박물관장, 이런 행정하는 분들은 자주 바뀌더라도 그 전시품을 직접 관리하고 전시하고 기획하는 큐레이터들이 탄탄해야 그 사람들이 전문인으로서 자리잡게 되는데, 지금 이게 각기 갈라져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통합되어 있으면 미국 같은 데는 전부 뮤지엄이기 때문에 큐레이터는 큐레이터 직종을 가지고 다른 박물관 큐레이터 부서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과학관에 어떤 큐레이터가 필요한 부서다, 그리 되니까 전국에 박물관이 늘어나는데 따라 상당한 큐레이터 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야 대학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각 대학에 박물관학과가 생겨서, 말하자면 졸업인원이 취직할 수 있는 하나의 수요와 공급의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물관에, 전체적으로 어떤 용어로서, 지금 전체를 통합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만, 어떤 의미로는 개념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한 곳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아까 큐레이터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큐레이터 문

제, 제가 보고 느낀 걸로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큐레이터 쪽에, 그 사람들에게 왜 미국은 큐리이터 자격시험은 없느냐 했더니 이것은 문화계의 관행으로 법 이상의 관습법으로 실천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는 뮤지엄 스터디가 대학원 코스로 되어 가지고, 대학에서 미술전공을 했거나 또는 고고학 역사학을 하고서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원 코스를 들어와 가지고 2년의 뮤지엄 스터디란 코스에서, 거의 절반은 이론적인 각종 박물관의 제도랄까 운영의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반은 인턴으로 현지의 박물관에 자기가 원하는데 나가서 직접 작품의 보존관리도 해 보고 수집도 해 보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졸업하고 나서 박물관에 취업이 되는데, 거기에 준큐레이터 또는 준준큐레이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10~20년 축적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책임 큐레이터가 되는, 그런 오랜 관행에 따라 우리가 다른 자격시험같이 일괄적으로 학과시험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실시하기에는 조금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 말씀을 간단히 맺겠는데, 저나 또는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오늘 좋은 의견이 개진되면은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고, 또 여기에 직접 입법개정을 맡아 주실 의원님들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많이 제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제 법을 상당히 자세하게 제안을 많이 하였는데, 법으로 모든 규정을 뚫는다 해도 사실은 이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박물관도 전체 박물관법 체계 속에 들어오는 문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기금문제라든지 지원문제, 운용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법에 아무리 규정이 되어 있어도 사실상 예산당국에서 예산의 배정이 안 되거나, 예산이 부족하면은 현실적으로는 법하고 현실하고는 별개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래 지향적으로 법제화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법제화 시키고, 법제화 할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정책이나 행정면에서 반영시켜야 될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제가 중간에 끼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준 그럼 지금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 시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회부터 사회를 보았습니다만, 저는 공주대학교 박물관을 맡고 있는 이해준입니다. 저희를 도와 주실 분들이 오시면 회장님이 꼭 좀 소개를 해달라 하는데, 저 뒤에 최희준 의원님이 나와 계셔서 인사 하신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의원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많아서 박수를 쳤으니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 박물관 미술관 성격별로 한 분씩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이 시안을 읽어 보고 미진한 점이라든지 또는 수정할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을 사전에 준비해 오시도록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오늘 여섯 분의 지정 토론자가 나오셨는데, 한분 한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우측에

원광대학교 박물관장을 맡고 계시는 윤용이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다음에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지금 사전자수 박물관장을 하고 계시는 허동화 관장님이십니다. 다음에 부산시립박물관장을 맡고 계시는 윤병용 선생님이십니다. 개정시안을 발표해 주신 유원적 선생님 넘어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 박영복 부장님, 그리고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님이셨던 박래경 선생님,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남대학교에 계시는 유흥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정토론에 주어진 시간이 한시간 남짓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말을 줄이고 간단한 교통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되는 토론에 두 가지로 커다란 전제를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없었던 것을 만들고, 좀 아쉬웠던 것을 고치자는 개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상론하고 우리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이 앞으로 점차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을 쌓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토론을 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앞으로 우리가 몇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종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이구요. 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박물관 미술관에 관련되는 분들이 한자리에, 서로 성격이 다른,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모이신 분들이 거의 비슷한 모습에 비슷한 목소리를 내줄 때 아까 우리 국장님 나오시고 했습니다만, 교육부나 문체부에서 일을 할 때도 신나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저는 도서관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해 보았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 행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일을 할 수 있을텐데, 자체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실속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단체가 있고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편차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큰 전제 위에서 모아지는 시발점이 되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일이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느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여섯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적절히 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알아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구체적인 논란의 문제, 우리 제안자가 나와 계시지만 보충해서 알고 싶은 거 정도는 답변을 하시고 토론은 다음 기회에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빠졌다, 이런 문제는 사안이 복잡하니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의견을 모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시된 대로 박영복 부장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 제가 박물관 미술관 진홍범의 개정시안을 가지고서, 저희 당사자인 박물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조금 아까 국장님 외에 우리 실무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문

체부 의견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984년에 제정된 박물관법이 91년에 전통법으로 전면 개편되었고, 이번 기회에 다시 말씀한 바와 같이 미비한 부분을 고치자 그런 기조로 되어 있고, 저희 문체부 입장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동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우리가 97년도에 바꾸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개정시안 전문 중에서, 저희가 문제점 된다고 생각되어 검토 분석한 결과를 16, 17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결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정부안도 물론이고 국회청원 법안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계와 관련단체 및 공청회를 통해서 될 것임은 누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혹시 빠진 것이 있다든지 저희 쪽에 의견을 주신다던지, 이 조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 보실 것이 있으시면은 끝난 다음에 다시 물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법 조문의 체계화 정리가 원래 기준이 도서관 전통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검토하면서 전체적으로 틀렸다는 의견이 아니란 것입니다. 전체적인 체계도 맞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개의 장으로 구별되어 있기에 그대로 따라 갔는데, 이것이 정말 완전한가 하는 것도 좀 검토해야 되겠다 봅니다. 물론 총칙이라든지 9개의 장으로 바뀐 것 중에서 우리가 빠진 것은 얼마든지 반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 공립, 사립박물관에 관한 사항에 별도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검토하여 보면은 국립, 공립, 사립 항목에 한 번 묶였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하나 하나씩 규정하기에는 물론 아까도 발표하신 유교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상으로 좀 손을 좀 볼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에 대하여 인데, 국립박물관 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발표하신 분 말대로 현재 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제 규정으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데는 적극 찬성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 양성제도는 조금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학예직끼리도 토론을 거쳤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인데, 학예직 즉 큐레이터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실수한 경험도 있고 거기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면허제로 하는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문현 정보학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과는 한 개의 학과니까 사서자격을 주면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학계열, 고고학계열 또는 미술사계열 아까 또 발표자께서 박물관학과를 말씀하신대로, 그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은 저희는 정말 다양합니다. 분야가 좀 그래서 이것을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앞으로 박물관을 운영할

주체가 결국은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견은, 전체적인 의견은 앞으로 전문가가 되고 인증제도를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원칙입니다. 저희도 이것은 더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공무원 채용 및 채용학대는 저희도 찬성입니다. 현행 동법에 박물관 미술관 등록요건에 전문직 1인씩 두개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일 학예직을 자격제도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요. 동법 8조에 현행법에서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쓰도록 하는 것은, 사서를 채용하는 것처럼 제한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는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격증과 채용제도와 병행해서 문제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교육부하고 제일 문제가 되겠는데, 만일 자격증이 가능쪽으로 간다고 판단되면은 노동부하고도 관련될 것입니다. 물론 좀 더 검토해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대학박물관에 관한 사항인데, 법 자체가 전통법이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런데 대학박물관은 교육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문체부 입장에서는 대학박물관도 등록이 되어서 거기가 기구도 되고 인원도 늘고 예산도 늘고 하면은 좋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부에서 많은 이해가 되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문제가 없고 다만 교육부쪽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다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설치근거, 지원, 예산지원, 전문직 구비, 건전육성 의무, 지도·감독, 보관시설, 문체부의 등록 등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설치근거라든지 전문직 구비라든지 또는 매장문화재 관리지원 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법이 되어서 문체부에 등록이 되면은 그 주체가 사실은 양쪽 부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 볼 때 이게 교육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관계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보존시설을 갖추어 문체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했을 때, 시설같은 것을 문체부에서 규정을 정하여 문체부에서 이 대학은 등록할 수 없다, 이 대학은 그러면 시설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쪽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행은 물론 등록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 자료의 기부근거 및 의무적 보상책 강구인데, 이것은 원래 현행법에도 금전 및 자료의 기부는 이미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인 보상책 강구 또는 세제혜택이라든지 기증자의 혜택 등은 별도로 관계부처와 협의

해야 됩니다. 원래, 기부금법에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은 소득세에서 소득분의 7%를 제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법 자체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기증했을 경우,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한 1억짜리 물건을 기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평가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세제를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요것은 조세 감면 규제법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해결을 좀 어렵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문박물관의 건립과 촉진 및 세제혜택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전문박물관 및 미술관도 이법이 진흥법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등이 개별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까도 유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진흥책을 우리가 찾아보자, 무엇인가 어디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자,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찾아서 만일 이것이 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면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학예원의 연구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법에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비 지원근거로 동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손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취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가 매장문화재 관리운영의 주체규정, 요거는 아까도 유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또 문화재 보호법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은 일종의 특별법이고 거기에 또 필요한 거를 규정해 놓았는데, 박물관법에 만들어 놓으면 서로 상충되어서 안 맞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위탁관리하고 지정하고 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39조에 관장이 위탁하고 시설을 보고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선생님이 아까 좀 양보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화재 보호법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좀 검토를 하셔야겠다고 발제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대학박물관의 매장문화재 위탁관리 요건으로 그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위탁관리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건 아까 대학박물관 등록하는 거 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소관하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 투자하는 의무를, 물론 욕심 같아서는 박물관 진흥법에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역시 교육부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에 보면은 우리가 유물을 빌려하더라도 우리나라 매장문화재로서 국가소유입니다. 원칙으로 국가관리입니다. 국가관리 중에서 무엇이냐 하면은, 중앙박물관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어 그 대학에 연구목적으로 또는 교육목적으로 유물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할 수 있는데, 시설과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모든 대학박물관이 거의 같은 좋은 수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기는 것은 그런 시설된 학교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검토할 부분이지만 일단은 법 자체는 대학박물관 요건을 저희가 보고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박물관 등록하는 기준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호법 내용에는관장이 주체가 되어 국가가 물건을 줄 때는 시설을 점검하고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문화재 보호법과 상충하게 됩니다.

다음, 문화재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조사의 학술용역은 등록한 대학박물관에 한하여 참여 토록 재한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발굴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등록된 박물관의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발굴해서 위탁관리도 할 수 있고 보존처리도 할 수 있고, 발굴보고서 쓸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큐레이터가 있고 시설도 좋고 보존시설도 되어 있는 팀에게 발굴을 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재 위원회에서 발굴허가를 해 줄 때 그 발굴팀에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 꼭 발굴할 것인가 판단하여 허가해 줍니다. 단, 뒤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발굴 허가권자는 보관시설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발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앞으로 우리가 위탁 관리할 때 그 시설을 보고, 문화재 보호법에 시설을 보고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해주는 것 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두 개를 겹쳐서 발굴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충분한 시설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는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여기서는 시설쪽에 치중되어 있고 문화재 보호법에는 발굴쪽에 치중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진흥기금의 신규설치 문제인데, 아까 우리 이경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욕심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고, 또 우리가 기금 펀드가 있어 가지고 쓰면 좋는데, 요것은 재경원하고 아주 죽을 심 잡고 노력을 장기적으로 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재경원의 동의만 있다면 의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관장은 학예직으로 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로 들어가는데, 법으로 정하고 나서 까딱 잘못하면 법이라는 것이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국·공립중에서, 물론 우리는 국립에 있습니다만, 박물관이 생겨온 이래 역대 50년 동안 한 번도 딴 사람들이 와서 박물관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학예직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박물관도 마찬가

지이고.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아까 미국 예를 우리 국장님이 드셨는데, 요새는 미국 같은데서도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관장을 경영학하는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경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또 대학총장도 많이 그러고 있고, 요새 국내에서도 대학총장을 공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꼭 전문가로,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학예직만 하라고 딱 법으로 정해놓으면 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전문가의 장단점으로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도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이 자격증제도로 되면은 뭐 이의 없이 전문가가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예를 들기는 도서관법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아직 법대로 모든 분야에 지금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적수급이 원활치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를 쓰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사회를 봐서 중요한 문제고 또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운영위원회 설치, 이것은 뭐 저희도 썩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유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위원회에 박물관 분과위원회가 있긴 한데, 자문기구이고 심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박물관 중에서 국박이 법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다, 그랬을 때 우리 힘만으로 말고 주변에서 여러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박물관이 커가고 미술관이 커가는 그런 것을 협조해 주면 뭐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타 문화시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같도록 하는 규정도 지금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상호간에 협력망 구성은 현행법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 제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박물관이라는 개념속에 어디까지의 문화시설을 넣을 것이나 하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는 협력관계는 계속 연구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보사회로 가속화 되니까 모든 것이 혼자만 가지고 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는, 가상의 한국 박물관 즉 보이지 않은 실체의 박물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전부 입력을 해서 서로 찾아 볼 수 있게끔 경북대학 부산대학부터 우리 국박까지 해서 전부 자료를 끼워서 같이 언제든지 뽑아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한국의 박물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대상은 계속 늘여 자료를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검토한 중에서, 나중 얘기지만 박물관 미술관 등록하는 것을 문체부장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자꾸 이양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도로 이관하는 것도, 이 법에 빠졌지만 우리가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간접시설 확충법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 관계, 예를 들면 산림법에서 요새 체육시설은 지을 수 있다, 학교는 지을 수 있다, 체육관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산

립법과 자연보존법 중에도 우리 박물관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가능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판단에는 90% 이상 유교수님 말씀에 적극 찬동을 하고 있고, 한 두개 문제는 저희가 반대 한다기보다는 서로 현실과 미래, 현재를 과거와 미래와 검토해서 좋은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준 아무래도 중앙박물관과 문체부라는 두 개 부처간의 이해라든가 일에 대한 시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길어 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술관 쪽에서 나와 계시는 박래경 전 연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좀금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경 예 알았습니다. 말씀 간단하고 짧막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내용이 짧다고 해서 내용이 결코 얕거나 또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고 나와 있는 그 표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박물관 즉 뮤지엄이라는 것이, 굳이 우리가 미술관과 박물관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두가지로 나누었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히스토리 뮤지엄이냐 아트 뮤지엄이냐 해서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닌가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법으로 보나 현실적인 기구 또는 그러한 업무내용으로 보나 어쨌든 우리가 뮤지엄이라고 하는 일에 관해서는 박물관이 개념상으로 우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서, 뮤지엄으로는 같은데 단지 그 내용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건 아주 크게 다릅니다. 모든 매장문화재나 이미 기존의 발굴되는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되는 소위 국가 우선주의로서, 여기에 준하는 박물관에 그러한 특히 국공립 박물관이 그렇습니다.

국립박물관의 소장자료와 대비하여 성격을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미술관의 경우는 당대라든가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다시 말하자면 크게 보아 움직이고 있는 우리 삶의 전체에 관계되는, 따라서 표철적으로 나타나는 미술품으로서 부단하게 움직이고 변하는 자료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이라는 틀 속에서 사실상 미술관이라는 그 개념이 노상 하위개념 내지는 매우 불분명한 개념으로 여태까지 이어왔던 바, 제가 10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학예관으로 경험에 미루어 봐서 그 절실한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유교수님이 여러 가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많은 것을 정리를 하셨고, 그걸 전부 읽어 보니까 매우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페이지로는 17페이지인데, 무엇보다도 현행의 진흥법에 보면은 우리가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여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조에 국립박물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박물관이다, 15조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관으로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관이라는 것이 요새 공립이다 사립을 망라

하여 지금 한창 진홍차원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생겨나게 되는데, 앞으로 잘못된 것 까지도 따라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하나의 기구를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공청회 내용으로 보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이 미술관은 사실상 대표적인 미술관으로서 역할해야 합니다만, 현대미술관이라는 문脈의 제약 때문에 사실상 국립종합미술관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현대라는 개념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관계분들이나 여기 행정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관계할려는 분이나 사실상 알게 모르게 인식에서 이런 것이 잘못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체적인 일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립중앙미술관이라는 성격으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뜻은 사실상 지금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자료수집 상한선으로 보아 근대미술관 현대미술관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21세기 미술관, 말하자면 그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미술자료를 그야말로 수집 보관 또는 연구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나 인류들에게 이것을 펴서 소개하고 같이 공유해 그러한 자료로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들을 맡고 있는데도, 법적으로나 실제적인 직제상으로나 매우 제약이 있고 현실적으로 지원과 과제를 제대로 펴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유교수님 발제안 17페이지에 국립박물관 미술관 속에서 아까 말씀대로 15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성격으로 보아 별관이라든가 본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또 앞으로 다가오는 세기에서 어떤 의미에서의 통일이라는 것을 전망하고 돌아보았을 때, 적어도 현대미술과 연관되어 미술문화의 창달을 꾀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복합적인 그야말로 중앙미술관으로서의 성격으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그야말로 미술관이 그냥 따라다니는 이하 동문이 아니고 아주 정정당당하게 내용에 따른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법적으로 반영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우리 박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전문인 양성문제라든가 그런 얘기는 더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부 차원에 연관이 되는 얘기로서, 우리가 미술관 했을 때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미술사 즉 우리나라의 미술사, 우리나라의 문화사 교육이 부실하여 협회사회에 대한 어떤 기본지식이나 양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의 학제를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내용에 뒷받침이 되는, 아까 박물관학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미술사와 문화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대로 잘 안되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노력은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몇 개 대학에

아주 몇 개 학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령 고고미술사학과 불교미술사학과 등 미술사 이전에 무언가를 붙여서 제한을 받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문화가 제일이다, 또는 예술을 진흥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있어야 할 그런 문제부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교수님도 역시 박물관장님이시니까 내용에 보면은 대학박물관에 대한 말씀은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학박물관 4, 5페이지에 개정방향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학박물관 말씀을 아주 잘 반영하였는데, 대학미술관에 관계되는 말은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자면, 미술대학과 미술학과가 있는 곳은 실제 대학 내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어, 학생들이 좋은 작품을 보고 좋은 유물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런 전통들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학교에 부속되는 미술관이 있어, 다른 미술관 박물관에서 구할 수 없는 귀한 작품들이 항상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그 동안 우리 미술학도들이 제대로 보고 배울 수도 없었는데도, 그 나마 좋은 작가들이 나오고 있고 배출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물론 이것이 꼭 같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한 생각이 있는 대학에서는 미술관이 사실상 필요하다 해서 법적인 반영이 필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박물관 외에 서울대학교에 부설 미술관이라는 것이 아마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38조에 보면은 지도·감독 항목에 가서 저 개인생각을 쭉 해왔습니다만, 가령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은 신설되고 있는 국·공·사립의 여러 많은 각종의 미술관 박물관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전문적인 차원에서 지도·감독이라는 강한 어휘이외에 지원이라는 뜻에서도 항상 어떤 협조라든가 또 물어왔을 때 또 대답을 해주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법적으로 반영된다면은, 그렇게 연관되어서 보다 더 훌륭하게 관리가 되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미술관의 운영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준 감사합니다. 미술관에 관해서는 토론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안을 만드는 분의 어떤 인식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이 사실 미술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시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박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미술관 운영 모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데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는가, 박물관 뒤에 따라 다니는 미술관 이런 식의 개념보다는 미술관의 입장도 있을테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이 시안을 만들 때 삽입하는 그런 노력을 미술관 쪽에서 별도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생님께서 미술관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도립 시립 이런 박물관들이 많은데, 윤병용 부산시립 박물관장님이 토

론해 주시겠습니다.

윤병용 저는 오늘 아침 여기 올 때까지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려고 하였는데, 발제자가 보류시켜 이것은 뒤로 빠졌습니다만 저는 시립박물관 18년을 근무하면서 10년동안 유물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느낀 건데, 제가 실무자로서 일을 할 때의 애로점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국가귀속 매장문화재 보관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별39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매장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한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매장문화재의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 2, 3, 4, 5, 6,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위임 또는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은 거의 대학박물관이나 저희에게 위탁이 되지만 사실 위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위탁이다, 위임이다 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반드시 위임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립박물관이나 도립박물관에서 전시품을 구할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대학박물관에서 벌굴된 유물을 거의 빌려 대여해 와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부터는 모든 중요 유물이 전부 중앙박물관에 환수되어 버리고, 저희들끼도 중요한 것은 거기로 가 버리니까 실제 유물의 전시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문화성격을 밝히는 박물관이 거기에 있는데, 그 곳에서는 볼 수 없고 그것이 전부 중앙이나 다른 데 가 버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 지역의 유물은 거기에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 한 개의 예가 독천동 박물관인데, 저희들이 분관을 하여 이번에 개관이 되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나 시민들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주 공격적인 것을 제기하는데, 왜 진품이 없고 전부 복제품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80%가 복제품입니다. 저희들 박물관에서 벌굴한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그걸 공격할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부산대학이나 부산여자대학이나 동의대학·동아대학 등, 많은 대학 중에서 저희들이 전시를 해놓으니까 왔는데 복천동 유물이 80%가 진품이 아니고 복제품이 되어 놓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 혹은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산시립박물관이나 대학이나 사립박물관에서 충분히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물론 학예직과 이런 것이 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 보관을 중앙박물관에서 위임시켜 줌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재는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죽 갖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는 얼마든지 순환해서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

으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전시 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관계된다면 참고로 하고 다음에 시행령이 혹시 고쳐질 때는 위탁이 아닌 위임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마한 문제입니다만, 도립·시립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의 학예직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돈 문제를 가지고 이런 데서 이야기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공채를 해 온 학예사는 월 연구비를 받는데, 별정직 공무원 추천을 통해서 들어온 특채 학예사는 연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똑같은 같은 일을 하는 데도 공채학예사나 학예관은 월 연구수당을 받고 있고 이는 국립중앙박물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정직 특채로 한 사람은 이것을 못 받게 될 때,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사기문제에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법에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은 고쳐서 동등하게 해 주는 것이 서로 연구하는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실제 박물관 중심으로 이야기 해서 죄송하지만은, 모든 매장문화재와 학예관의 문제는 위임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시각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준 사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 각각 위상이 다르지요. 어느 수준에 오른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는가 하면, 아직 디딤돌 놓고 가고 있는, 그러면 법이라는게 균일화 내지는 평등화 개념에 치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최고의 이상가치, 예를 들면 영국 무슨 박물관 같이 그대로 하자, 이렇게 갈 것인가를 빨리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상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게 많지요. 학예직도 20명 있는 것 보다 50명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은 분명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나마도 안 되는 박물관을 끌어 올리자, 미술관을 끌어 올리자, 이런 쪽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논의의 초점이 시행령에서 할 것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큰 것 이렇게 이야기다 좀 되어야지 않겠는가 저는 사회하면서 이런 게 느꼈거든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서 해주시고요.

박영복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매장문화재 시행규칙은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탁문제에 대하여는. 지금 지역에 있는 유물들을 그 쪽에 맡기면 좋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중앙박물관은 없습니다. 중앙박물관은 없어요. 다 주어야지요. 왜 독천동 것, 예를 들어서 독천동 것 70%를 전시하고 30%를 서울에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만큼 좋은 물건이 나와서 지금 국내사람 외국사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발굴하시는 편에서 보면 그 지역에 두시는게 좋은데, 제가 땀말씀 안드리고 이것을 좀 넓게 봐야지 우리가 발굴했으니까 우리가 가진다, 그러면은 중앙박물관 없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준 말씀하신 분이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님입니다. 유념해서 들으신 모양인데,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박물관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사전자수 박물관의 허동화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허동화 처음에 약속하기는 뭐 뭐는 이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우리 사회를 보신 이해준 교수가 얘기하라 하더니 먼저 말씀한 분들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이경재 의원님께서 축사중에 기금조항은 참 좋지만 관계부처와 협의가 참 어렵다, 난색을 표명하셔서 아주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제1장 총칙의 제10조 진흥기금 설치문제는 제안이라기 보다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출판협회 출판기금입니다. 자기자본 10억에 공익자금 90억을 얹어서 100억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아마 요새 생겼다면 100억이 아니라 한 500억쯤 있어야 될 일 같습니다. 오래 전에 생겼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협회는 이 법이 통과가 돼서 근거가 생기면 한 500억쯤의 기금을 가지는 금고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대체로 법에서 한 반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제 돈의 가치 하락 때문에 재적립을 해야 되겠고, 이 중 25억 정도는 협회를 운영하는데 지원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박물관협회를 보니까 한 20명 가량의 전문위원을 고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해당 박물관에 공급을 해주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세한 박물관을 지원해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돈이 한푼도 없는 협회가 500억 운운하면 사치스러운 얘기 같지만 기금은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한 200개 정도의 사립박물관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좀 큰 사립박물관들이 있고 그래서 좀 금액이 크기는 합니다만, 한 박물관당 1억 이상 모두하여 2, 300억씩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박물관 1000개 시대가 열리면 매년 1000억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박물관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박물관이든 간에 다시 말하면 500억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1년 적자의 반액밖에 안 됩니다. 또 거꾸로 얘기해서 그 돈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박물관 운영에 1000억씩 적자가 나는 그 박물관에 일부분을 지원해도 미흡합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목표를 무한정 설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한 50억 정도는 협회에서 자기자금을 시간은 걸리지만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박물관 육성지원문제, 제4장 21조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박물관학회 관련되는 학회가 한국에 연수를 오고, 저희 협회가 주최를 해서 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 6000여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그 중에 등록된 것은 1000개 미만인데, 규제가 심해서 등록된 박물관도 탈퇴를 할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럼 저희는 뭘로 지탱을 하냐 하면, 먼저 법에 허가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박물관 미술관의 용어를 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조항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규제라는 생각이 드는 조항은 될 수 있

는 대로 많이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제혜택, 세제혜택 하지 만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체육부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 또 시대의 조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금 기금적립같은 것은 배제하는 분위기 같은데, 어쨌든 인색하지 말고 세제혜택을 최대한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기금 생기면 영세한 사립박물관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 지역사회에 박물관을 후원하는 후원회가 결성이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후원회에서 어려운 점들을 보충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히 될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법에서 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박물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모법에 어떻게 표시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지만, 사실 사립박물관을 하고 있으면 가장 비참한 것이 열심히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지만 참여도 가 너무 낮아서 쓸쓸하기 짹이 없습니다. 이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분위기자, 그렇게 전환될 수 밖에 없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 번 또 생각하고 넘어 가야 되겠는데, 어쨌든 저 자신도 이행을 하게 될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사회환원의 수용정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켈른에 사립박물관이 30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사회에 환원된 박물관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립은 개인이 좋아서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뭐 있고 지원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사고 방식 때문에 아주 동떨어진 상황인데 글쎄요, 법으로 해야 될려는지 관행으로 해야 될려는지 잘 모르지만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은 안되지만, 지금 아까 규제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등록을 신고제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고제 정신은 사실은 정부가 이 법 운영에 최대한으로 관여하는 것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협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협회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신고를하도록 하고 그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개관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없겠는가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9장 44조에 자문협력기구인데, 여러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문화재 위원회하고 이 기구하고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 저희는 정책을 입안하는 심의기구로서 위원회를 두자는 것인데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미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미래 박물관 혹은 통일을 목전에 둔 우리 입장에서 통일을 전제로 한 박물관이 고려되야 않겠느냐,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빨리 박물관이 표준화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학교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요. 인구 몇 만명에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씩을 둔다, 이것이 기존도시에는 힘들지만 신도시라든지 개발 지역에는 적용되고 있거던요. 특히 북한과 통일이 되면 저희는 아마 10년쯤 되면 박물관이 1000개를 해아리는 숫자로 갈텐데, 북한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해당하는 박물관을 몇 개, 또는 한십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자수박물관은 서울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안주나 구성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때는 혜택을 주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통일을 전제로 한 법을 우리가 고려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이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가 설치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표준화 하는 작업부터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진홍법에 관한 문제는 많이 말씀하셨지만,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됨에 따라 이제는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자리를 다 뜨셨지만, 지금 이 개정시안도 저희 박물관협회나 또 대학 박물관협회 힘만으로는 가능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요 통일문제를 좀 힘써 주셨으면 해서, 우리가 이 법을 세계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해석을 해서 두가지 표현은 바람직 하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장 13조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미술관으로 한다, 선언적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저항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다면은 국가기관의 과학관과 기념관, 동·식물원 등 각종 국가기관의 박물관은 다 상징적 표현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면 용어를 통일한다는 전제하에 국립중앙박물관 하나로 족하다 봅니다. 똑 같은 개념으로 볼 때 두 개씩 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만, 제안설명이나 또 여러 언급중에 먼저 박물관 진홍법이 출속법이다, 아주 법이 좋지 않다 하는 표현들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때 참여한 한 사람으로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법을 만들지만, 또 5년 후에 출속법이라는 얘기를 들을 가능성성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그 당시에는 최선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아는 분이 많이 있지만, 극적으로 그야말로 법안이 박물관법으로 개정법안이 다 끝나가지고 법제처에서 형식적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로 회부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협회에서 이어령장관을 찾아가서 이 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법에 대하여 정부측에서는 지금 문화재보호협회 이사장으로 있는 김정배 이사장이 정보를 주었고, 그때 담당하는 문화체육부에 지금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는 정덕용실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법제처에 가 있는 것을 끌어내려 가지고 진홍법이라는 이름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화체육부가 식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때 상황으로는 다른 조항

을 고칠 시간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극적으로 진홍법이라는 이름 하나가 붙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개정안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때 노고와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표현들도 좀 잘 신중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박물관 문화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분야 분야마다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박물관 문화는 유네스코 현장에 있다시피 비영리사업으로 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좀 다르게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렵지만 저희들을 대신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이해준 그런데 회장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부분에 코멘트를 한다면 회장님의 하셔야지 딴 사람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체가 지금 위원장님으로 두 협회 회장님이 계시지만 사실 임자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 자리가 끝나고 다음 후속작업을 할 수 있는 각 협회별로 조직을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지금 누가 해주고 누가 해주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빠져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협회들이 전부 주인이 되야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대학박물관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대학박물관 얘기가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미술관 얘기 나오면 나하고 관련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다보면 절대 이게 안 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한쪽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와 공조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은 35분이고 그래도 이후로 교수 두 분만 남았으니까 처분만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다음에 원광대 윤용이 교수님 발표해 주십시오.

윤용희 현재 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한 42만 점에 달하고, 국·공립과 합하면 한 70여만 점에 달합니다. 그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로서 수량이나 학술적 가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박물관이 법에 의해서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 만들어 지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를 보면은 대학 종합교육평가 뭐 이런 테이블에서도 박물관은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학교로서는 있으나 없으나 한 텏인지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법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대학박물관은 계속 위축되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교육법 시행령에, 예를 들면 사립대학의 경우는 '들 수 있는 기구로' 되어 있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기구이며, 국립대학은 '둬야 하는 부속시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마 이 규정이 사립대학도 역시 '둬야 하는 기구'로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관계 법령과 함께 만들어져서 예산과 학예직 및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84년 이전에는 사

립대학 역시 예전에는 ‘둬야 하는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근래에 바뀌어진 ‘둘 수 있는 기구’로 되어 있는 기구를, 다시 ‘두어야 하는 부속시설’로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작은 하나는 7페이지에 있는 학예사의 임명에 관한 세부적 법령에 속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큰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로서 시험과목 문제입니다. 공통과목과 같은 경우에 박물관학, 한국문화사, 사회교육론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6개로 나눈 것은 앞으로 더 나눌 수도 있다는 것으로 타당하지만, 예를 들면 박물관학은 박물관에 관한 학예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대학에서 설치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법이 성안되면 박물학에 대한 개괄적인 공부를 하게 될 텐데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교육론과 같은 것은 아마 박물관학 안에 내용적으로 사회교육의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사회교육론을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박물관학 과목의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박물관학, 한국문화사 이런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괜히 사회교육론 해서, 사회교육론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박물관학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열과목도 계열에 따라서는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민속 학예사에서 지방사 연구법, 한국서지학, 한국민속학 등인데, 한국사에서 보편적으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앞에 이야기 되어 있지만,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씩 조정되어야 합니다만,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마땅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준 보십시오. 확실히 협조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 유선생인데, 또 협조를 해 주시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유흥준 선생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유흥준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의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토요일날 가방없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방없이 갈 테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지고 얘기하는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구같은 데 가면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이 서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법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방없는 교육에서부터 그런 문화를 향유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절대적인 빈곤을 탈출할려는 노력을 해 왔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열 몇째가 됐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70~80째 정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고치고 가야 되는데, 84년인가요 그때 고치고서 지금 또 고치는 판입니다. 지금 해 봐야 아까 허동화 관장님 말씀대로 흡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또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착실하게 쌓아온 뭐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것은 이 박물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까 문체부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가서 보고 박물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물관 관계하는 사람들은 미국가지 않아도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은 다녀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석사과정까지 하시고 그리고 또 와서 전문행정가로서 그것을 합니다만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 사람들이 박물관이 뭐하는 것이냐고 했을 때 박물관 같은 사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물관 참고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고 같은 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문화인식 수준 전체를 개조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적에는 우리 기본개념 자체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도 할려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이제 제가 메모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하고 미술관 개념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다른 저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려는 건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아이쿱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규정대로 박물관으로 하며, 박물관 속에 미술관도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이 다 들어오면은 그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의 개념은 계속해서 신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세월 흐름 속에서 변할 수 밖에 없는 데, 그 뮤지엄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이거 다 치우고 뮤지엄이라고 가다가나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경성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개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용해 오는 개념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화도 하고 해 가고 하는 것이 혼선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호암미술관을 누가 박물관이라 해야 합니까? 거기에서 미술관으로 부르던 갤러리라고 부르던 자기네들이 부르고 싶은대로 해 주고 성격을 박물관으로 하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은 한 나라의 문화유산이 모이는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전통과 권위와 자존심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을 국가에서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문화의 실상이 거기에 와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안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말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급 별정직입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장은 2급직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근한 예로,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뽕빼두 센터의 관장을 만날려고 외교적인 체널로 해 가지고서 넣으면은 외교적인 체널은 같은 직급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이니까 아마 한 직급 깎아서 만날려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뽕빼두 센터의 큐레이터 밖에 못 만나는 겁니다. 그 직급으로는 외교상으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개인적으로 친해서 전화로 연락해서 그 집에 가서 파티에서 포도주 한잔 얹어마시는 것은 가능해도, 공식적으로 그 집에 전시계약을 하기 위해 갈 적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겁니다.

자기네 나라의 문화의 한 상징적인 존재를 자기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깎아놓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 사람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요구하지도 않아요. 1945

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만들어 질 때, 그 때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급입니다. 그때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이 20명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600명이 넘습니다. 산하에 8개 박물관이 있고 금년이면 3개가 늘어서 11개 박물관이 전국에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가질 수 있는 위상을 이렇게 낮추어 놓고 난 상태속에서, 우리가 박물관법을 암만 법으로 얘기 해 봐야 국민의 민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나라 살림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만드는 것은 쉬워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종합예술학교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문화연구원장이라던지, 국립개발연구원장은 차관 또는 장관급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나 국립현대미술관장 직급은 못 올리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쪽을 더 올렸어야지 옳다고 생각하는 데도 못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한 나라의 문화유산을 담당하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정신문화연구원장이 총리급이면은 국립중앙박물관장도 총리급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민족을 더 당당하게 얘기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길일려는 지 모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학예직으로 한다, 이는 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마 만한 덕행과 학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관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가 없는 사람이 관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쟁피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회가 되면은 되는 것이지, 거기다 규정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직급을 낮추어 놓고 위상을 낮추어 놓으시까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우려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박물관 문화나 한 나라의 박물관이 가질 수 있는 힘, 그런 것은 국가의 그거야 말로 정책입니다. 정책인데, 그 분들의 인식을 완전히 트랙터로 밀 듯이 개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학과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세계에 박물관학과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를 하는데, 회화사 관계는 회화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도자기는 도자사를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박물관 전공하는 사람이 도자기를 연구하거나 진열하는 것 아닙니다. 박물관, 아까 시험문제에서 공통과목 저도 얘기 할려고 그랬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할 사람이 보는 가장 기본적인 과목은 한국미술사입니다. 그게 어떻게 선택과목 입니까? 안 해도 들어와서 학예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미술사 시험 안 보고도. 문화사하고 미술사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언제적에 만들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교육론은 그건 보사부에가서 하든지 다른 데 가서 할 일이지, 여기서 왜 합니까? 한국미술사 시험도 안 보고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현실이, 참 기가 막힌 현실인 겁니다.

박물관, 우리나라에 문화유산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연구하고 뭐하

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거는 미술사하고 고고학입니다. 민속학 그렇겠지요. 대한민국에 박물관학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술사학과가 없습니다. 고고미술사학과가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서울대학교에 고고인류학과가 있다가 문리과대학이 사회대학하고 인문대학으로 나뉘면서 인류학은 사회대로 가고, 인문대학에 고고학이 오면서 김원룡 선생이 삼불선생이 미술사학과가 없다는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고학과에서 끌어 안아주어 가지고 고고미술사학과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연과학과 공과대학 위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인문분야에서 학과증설이라는 것은 절대 불허 했습니다. 50년 동안 불허했습니다. 신설학과를 그것을 냘려고 하면은 다른 과에서 사람을 꾸어다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서는 박물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문화유산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할 학과가 대한민국에 국립 서울대학교에도 없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게 80년입니다. 고고미술사학과가 그래서 서울대학에 만들어진 이후에, 전국에 이제 10개의 고고미술사학과가 있습니다만은, 고고학과와 미술사가 붙어 가지고 고고미술사학과가 된 것은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건 별개의 학문입니다. 저희 영남대학교는 대학원 과정에서 미학미술사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전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제가 가기 전부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건 서울대학교에 김원룡이라고 하는 학자가 고고학과 미술사 두 개를 전공했기 때문에 가능해서 만들어졌던 것인데, 신설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설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해보았어요. 그게 원래 학문의 정도라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얻는데 그렇지 않고는 허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설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도 암만 얘기를 해 봐야 한국미술사학과를 만들자고 해 봐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묶여 있는 법들을 갖고서 우리가 지금 박물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박물관법이 박물관을 만들지 못하는데 일조를 했던 것이, 현행 박물관법은 사설미술관을 만들라는 법이 아니고 만들지 말라는 법입니다. 규제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설미술관을 해 가지고, 국민의 사회교육을 국가가 할 것을 개인이 해 준다고 했을 적에,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것에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사설미술관을 짓는다면 예를 들면, 원래 미술관 건물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그지없이 아름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건축법에 다 걸려 버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풀어줄 의지도 없는 겁니다. 할 방법도 없어요. 오히려 박물관이기 때문에 뼈딱하게 보는 세상의 눈이 문제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돈 쓰고 남아서 다른 취미생활 비슷하게, 쓸데 없는데 돈을 써 가지고 미술품을 샀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지금도 국민의 반 이상입니다. 미술품 콜렉터에게 보내는 시각, 아마 이 중에 있는 사람도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미술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분의 안목

이 높다고 칭찬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은 재력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샀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는 쓸데없는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치성으로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설미술관이 만들어 졌다는 것은 참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책을 보면은 동산문화재들의 경우에는 개인소장 아닙니까? 떳떳하게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이름을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밝혔다가는 욕을 먹게 되니까요. 예술의 전당에서 글씨 전시를 할 적에 제가 좋하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 공부 할려고 옛날 사람들 편지를 몇 개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거 5만원, 10만원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그거가 도록에 유 아무개 소장으로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인세 받아가지고 그런 것 샀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개인적으로 그 손해 본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으로 규정을 해왔으니까요. 미술품은 한 나라의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도자기 하나가 70억원 한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이 활자로 되지 않았던 또 다른 우리민족의 정신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 인식속에서 교육으로 연결을 해가야 되는데 기본정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박물관법이고, 미술관법은 전문가들이 그 수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낼 것입니다. 만들어 낼적에, 기본적으로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행정부처에 있는 사람, 국회의원, 법제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본정신을 과연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그 분들이 법이나 행정이나 경제는 최고 수준인지 몰라도 문화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식으로 법을 개정하면은 허동화 관장님의 비극적인 말씀처럼 그런 예언을 하실 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물관 유지하는데, 맴버쉽이 아마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일 겁니다. 사립박물관이 살아 날 수 있는 방법과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이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그 기능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기업이 그 사립 박물관에게 기여했을 적에 분명하게 세계상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예진흥은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기업이 자기가 문예진흥기금을 내는 그런 마음으로 사립박물관에도 어떤 전시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기여했을 적에는 당연히 그것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낸 것으로 충해서 세계상의 혜택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기금을 내면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간단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관례를 세계상의 혜택으로 해주는 풍조만 생기면은 우리 사설미술관이 활성화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맴버쉽 운영, 외국의 경우에 다 맴버쉽으로 운영하지요. 뉴욕의 메트로폴리스탄 뮤지엄, 그 거대한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박물관을 다 더해도 몇 배가 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맴버쉽으로 운영합니다. 설립하는 것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했을 적에 맴버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제도로 안착시킬 수 있는 그

런 법적인 보강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박물관을 생각을 했을 적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국가가 통제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법안에 있는 거 하고 그것 없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박물관의 기본을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물관은 건물과 유물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물관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박물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물이고, 집은 없으면 창고를 빌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관의 이름이 붙은 데에는 유물이 하나도 없어도 다 빌려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L.A 카운티 뮤지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각 전시실 하나하나가 다 기여한 사람들의 방으로 꾸며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그것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까만, 아마 건물도 누가 기여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마만한 능력과 그만한 컨센서스를 형성을 하면 L.A 카운티 뮤지엄 같은 거가 형성되는 겁니다. 개인이 미술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집에서 혼자 가지고 있는 것, 치치하기 힘들어서 누가 공공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흔쾌히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방은 그 분의 이름으로써 누구의 갤러리라고 해 준 것으로써 그 명예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것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 가면은 현수명 선생이 62점인가 기증해 왔던 것 여태까지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동원기념실로 해 놓은거 있지요?

그런 식으로 개인이 애정을 가지고 모아 놓은 것이 사회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우리가 박물관을 이야기 할 때, 국가에서 보면은 건물 먼저 품나게 지어놓고선 어떻게 박물관 할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했지, 그것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가까지 생각이 미치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모든 게 하드웨어만 근사하게 먼저 해 놓고 뒤에 소프트웨어 생각하면서 선진국 간다고 외쳐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 어느 선상에서 헤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에 있는 선례들을 우리들이 따라갈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좋은 참고 사항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박물관 관계자들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문화관계에 있는 부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박물관협회나 대학박물관협회에서 한 번 현대사회 속에서 박물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십포지움도 하고 홍보를 하면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 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번 것을 봐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아울러, 박물관은 아무나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이 자료관, 역사관, 교육관 등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유물 없어도 만드니까요. 판넬과 모형을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부산시립관장님은 복천동 유물에 섭섭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거기에 있으면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자료관과 사료관으로써 예를 들면, 일본에 아스카 자료관 같은 데에는 복제품이 많고, 가사하라 시품이 있는 후지하라 고고학 연구소 같은 데는 진품을 놓고 하는데, 우선 시설 자체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보존 보관 관리 능력이 있는 데는 진품을 갖고 안심하게 하는 것이고,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볼 적에는 교육이면 교육으로써 해 나갈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영남대학교에 아주 귀중한 매장문화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당동에서 나온 원삼국시대 때 오리인데요. 이번에 박물관 옮기면서 한영희 고고부장이 그것을 가져갈려고 달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입장에서도 그것이 아주 상징적인데, 그것을 주면은 방이 비는데 그런데 저희는 드렸습니다.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영남대학교 있어 보았자 학생들도 잘 오지 않는 데 거기 있는 거 보다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는 게 그 유물의 명예를 위해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오리가 나올 때 눈이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깨졌습니다. 눈이 있는데 옆에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개안수술 다 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은 자기가 가 있는 제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박물관 문화를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적에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박물관에 있건 어디 있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편하게 좋게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얘기가 길어 졌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이해준 좀 길었어요.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문화한다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기느냐 아니면 진지하게 연장을 하느냐 판단은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를 잘못 봐서 사실 이 방청석에 있는 분들의 토론을 우리가 유도를 못했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지요. 예정되어 있는 시간은 지났는데요. 질문하실 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질문하실 분은? 제일 먼저 드신 분은 저쪽 분이십니다. 예 간단히 좀 해주시지요

방청자 A 민속촌 박물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용호입니다. 박물관협회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교수님께서는 세계에 박물관학이란 없다고 하셨는데, 많은 나라에서 박물관학 전공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인도에서도 박물관학은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박물관학 전공자로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홍준 교수님께 ······ (녹취 불가) ······

이해준 최 선생님, 이상한 말씀인데, 결론으로 하실 것이 무엇인가만 얘기해 주십시오.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토론 뭐 그런 토론하는 것은 아니니까 ······ (녹취불가) ······ 그 최 관장님이 연구도 많이 하셨고, 이쪽에 많이 조예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최관장님 같은 분이 시안을 만들 때 많은 아이디어를 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합

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게 시안을 만드는 사람은 시안을 만들다 보면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할려면 시안이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점만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관장님 다음 분!

방청자 B ······ (녹취불가) ······

방청자 C ······ (녹취불가) ······

방청자 D ······ (녹취불가) ······

이해준 지금 청중질의를 몇 분 받아 보았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지탄을 하셔도 저도 마찬가지로 느낍니다. 예를 들면 준비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시안이라든가 진행이 좀 깔끄럽지 못하신 것을 느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박물관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통하게 그것을 하기 위해 있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시안발표를 하신 유원적 선생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자리가 되었고, 사실은 이게 내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서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자기 이해를 전부 반영을 하시고 싶어 하실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큰 모양새를 갖추는데 그 각 다리들이 어떻게 정 위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전부 자기 입장만 얘기하다 보면 절대 이게 될 수가 없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학박물관협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추진하다가 이게 커져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기왕에 이것을 할 때는 모범 자체가 기본적으로 박물관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그 과정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각 협회별로 이 안을 가지고 좀 다듬어 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빠진 부분에 누구 누구 들어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도 추천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걸러지는 장치가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법의 필요성과 법의 내용, 범위,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힌 것만 해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잘 모르고 있었다고요. 당장 내가 운영하는 우리대학 박물관의 문제점만 알고 있었지. 전체체계 속에서 그것은 무엇인지는 몰랐다 이말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시화 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좀 공감을 해 주시고 힘을 불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힘을 여러 방면에서 몰아 주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언뜻

느끼는 것이 분란만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나마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각 협회 회장님들이 이따 친교의 장 때 한 번 같이 좀 만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럼 정리를 해서 끝낼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쁜 일정속에서도 여기 오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셔서 우리 문체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동채 의원님과 배종무 의원님, 그리고 이용희 의원님이 오셨다가 가신 것 같구요. 정영훈 의원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인사, (박수). 그 다음에 신영균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수). 저희 이해 문제가 아니고 저희 나라 문화 전반적인 것과 관련되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사회도 잘못 보았고 또 이 내용의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리고 각각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얘기가 다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론이 좀 더 수렴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구요. 그럼 유원적 교수께서 다음 일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적 다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입법청원을 위한 공청회인데 작년 11월에 국회에 민원형식으로 제가 만든 이 시안을,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검토를 하고 해서 법률조언을 해서 좀 넘겨달라 하는 진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입법예산실에서 다른 법률과 상충이 있는가, 법률검토를 해서 넘겨주면은 오늘 여기서 수렴된 의견하고 해서 다시 법안을 만들어서 신한국당의 박종웅 의원님과 국민회의의 정동채 의원, 그 두 의원께서 발의를 주도하도록 해서 넘깁니다. 그러면 그 의원께서는 법률안발의에 의한 필요한 의원 20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국회의장에게 의안으로 발의하게 됩니다. 발의하게 되면은 그 안건이 국회의 문화체육공보위원회로 심의가 넘어오고,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서 심의할 때 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소위원회에서 문화체육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재정경제원 총무처라든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법안을 만들어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로 넘겨서 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은 앞으로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의를 주도할 두 의원님께 이 개정시안을 넘길 때에는 현재 국회에 들어가 있는 법률검토를 받은 그런 시안을 넘겨 받아서 다시 저희가 손을 보아서 의원님께 넘겨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좀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의원발의에 필요한 개정시안을 다듬을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다듬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잠깐 논의해서 결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준 그것은 이파 저기 만찬하시면서 양 협회 회장님이 하시고, 일단 너무 늦었으니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원적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만은, 원래 그 안내장대로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박물관장과 미술관장 연서명을 받아서 의원발의에 필요한 청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제가 보낸 엽서에 오늘 공청회에 참석은 못하지만, 우리 위원회에 서명을 일임하겠다 하는 위임서명은 한 40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은 현재 위임서명으로 지금 서명명부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께서 국회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시면 서명부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속과 직위와 성명을 기입하시고 서명날인 하시어 많은 분들이 개청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개정청원 작업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준 나가시면서 서명을 해 주시고 지금 만찬회장은 바로 이 복도 저쪽이라고 하니까요. 그러시고 저는 이 사회임무만 맡았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만찬회장에서 양 회장님들의 인사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